

POLICY/정책 BOARD OF EDUCATION OF MONTGOMERY COUNTY

관련 항목: GCA- RA
 책임 부서: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

윤리(Ethics)

A. 목적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관련 모든 사람이 최고 수준의 윤리적 행동을 하도록 육성하고, 교육위원회, MCPS 학교 임직원과 고용인의 공정성과 독립적 판단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비호하며 윤리와 관련된 지침을 MCPS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B. 이슈

2010년 Maryland 법 277 조항은 지방 교육위원회가 이해상충과 재산공개, 그리고 교육위원회 의원과 MCPS 학교 고위 행정직원과 고용인의 공정성과 독립적 판단에 대한 최고 수준의 대중의 신뢰를 유도하기 위한 로비활동에 적절한 규정을 채택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C. 정의

이 정책에 사용된 단어는 아래에 책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뜻을 가집니다:

1. *기업(Business entity)*은 일반 또는 합자회사, 개인영업, 합작사업, 비법인 단체 또는 기업, 기관, 신탁, 재단 또는 모든 영리 또는 비영리 기관을 의미합니다. 기업에는 정부기관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선거위원회(Board of Elections)*는 Montgomery 카운티 선거위원회를 의미합니다.
3. *보수(Compensation)*는 이 정책에 포함되는 개인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고용주로부터 받았거나 받게 되는 형태에 무관한 돈 또는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에서의 *Section H. (로비의 폭로:Lobbying Disclosure)*의 목적은, 만약 로비가 고용의 일부일 경우, "보수(compensation)"는 로비에 사용한 시간을 고용의 다른 의무에 사용한 시간과 비교한 것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4. *함께 사업을 한다(Doing business with)*는 것은 교육구의 감찰 아래 달력연도 1 년 동안 1 회 또는 여러 회의 거래로 5,000 불 이상의 교육구 펀드를 사용하거나 정책 *Section H. (로비활동의 공개-Lobbying Disclosure)*에 명시된 로비스트로 등록되어 계약하거나 협상 중인 것을 의미합니다.
5. *고용인(Employee)*은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의 모든 고용인입니다.
6. *금융이자(Financial interest)*의 의미는:
 - a) 소유자가 과거 3 년 동안 받았거나 아니면 현재 받고 있는, 또는 앞으로 받게 되는 연간 1,000 불 이상의 이자의 소유; 또는
 - b) 고위 행정 공무원 또는 고위 행정 공무원의 배우자가 기업실체의 3%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양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식 소유. 또는
7. *선물(Gift)*은 적합하고 법에 접촉되지 않는 형태에 상관없는 모든 형태의 경제적 가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Maryland 또는 지방법 하의 정치운동 기부는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D.6.d 의 예외 참조)
8. *집주소(Home Address)*는 개인의 주거주소와 만약 있을 경우 Maryland 법에 명시된 제 2 의 집을 의미합니다.
9.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은 배우자와 부양자녀를 의미합니다.
10. *이자(Interest)*는 이는 보고 기간의 상시 동안에 저당여부나 상태에 무관하게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공동 또는 개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유지하여 취득하는 법적 또는 공정한 경제 이자입니다. 이자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a) 항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공정한 이자를 갖는 경우를 제외한, 개인적 대리인, 개인적 대변인, 대리기관, 후견인, 수탁자 또는 피신탁인이 갖고 있는 이자.

- b) 특정 기간 동안의 이자 또는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디파짓 예금에 대한 이자;
- c) 보험, 생명보험 또는 보험가입자가 지정된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하거나, 평생 정기적으로 또는 특정 기간동안 지불하기로 한 연금 계약에 대한 이자;
- d) 내국세입법 하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승인한 자격을 갖춘 신탁으로 25 명 이상이 참여하는 신탁기금(**common trust fund**), 연금의 부분이 되는 신탁(**trust**), 이익배분의 형태입니다.
- e) 내국세입법에 따른 대학 학자 적금 계획; 또는
- f) 뮤추얼 펀드 또는 상장수지펀드가 개별 정부 단위로 규정된 특정 지구 또는 지역에서의 주식과 이자 소유로 이루어질 경우를 제외한 전국 규모의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뮤추얼 펀드(**mutual fund**) 또는 상장수지펀드(**exchange-traded fund**).

11. 로비활동(**Lobbying**)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해당 고위 행정 공무원의 공적 행동에 영향을 줄 의도로 학교 고급 행정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소통을 하고 달력연도 1 년 안에 음식, 유희, 선물로 100 불 이상을 소비하거나 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b) 공적 행동을 결과할 의도를 가지고 이 활동의 촉진을 위해 달력연도 1 년 내에 300 불 이상을 들여서 다른 사람이 행정 공무원과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 경우.

12. 로비스트/로비활동가(**Lobbyist**)는 이 정책의 section H 에 따라 로비활동을 보고하고 사용한 비용을 보고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13. 고위 행정 공무원 또는 학교 행정 공무원(**오피셜 또는 학교 오피셜-Official or school official**)은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의 고용인, 교육감을 포함한 MCPS 의 특정 고위 행정 공무원 또는 고용인입니다.

14. 위원단(**Panel**)은 위원회의 윤리 위원단(**Board Ethics Panel**)을 의미합니다.

- 15. *개인(Person)*에는 개인과 기업 전체를 포함합니다.
- 16. *적격친척(Qualified relative)*은 배우자, 부모/후견인, 자녀 또는 형제/자매입니다.
- 17. *교육구(School system)*는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교육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18. *권한에 따른다(Subject to the authority of)*는 의미는 교육위원회가 기업체를 감찰하거나 교육구 정책이 기업의 경영에 현저한 권한을 갖거나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D. 이해관계 상충(CONFLICTS OF INTEREST)

1. 참여

a) 교육위원회 정책 또는 MCPS 규정이 승인하고 있거나 행정, 행정적 의무의 실행이 문제의 처분 또는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위 행정 공무원은 다음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1) 고위 행정 공무원 또는 고위 행정 공무원의 적격 친척이 이해관계가 있고 고위 행정 공무원이 알고 있는 사항;

(2) 다음의 당사자가 연관된 사항:

(a) 고위 행정 공무원과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고위 행정 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실체;

(b) 고위 행정 공무원 또는 고위 행정 공무원의 적격 친척이 고위 행정 공무원(officer), 관리자(director), 이사(trustee), 파트너(partner), 또는 직원/고용인(employee)인 기업실체;

(c) 고위 행정 공무원 또는 적격 친척이 장래 고용을 위하여 협상 중이거나 고용의 거점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위 행정 공무원이 알고 있는 기업실체;

(d) 학교 고위 행정 공무원 또는 고위 행정 공무원이 알고 있는 한에서의 적격 친척과 기존의 계약 관계가 있는

기업으로 고위 행정 공무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에서의 고위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역할 간에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을 수 있는 기업;

(e) 고위 행정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기업이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 시스템과 사업을 하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만약 고위 행정 공무원이 양쪽의 직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알고 있다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f) 기업 전체는;

(i) 고위 행정 공무원이 아는 기업체로, 고위 행정 공무원이나 고위 행정 공무원의 적격 친척으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의 채권자나 권리자일 경우;

(ii) 기업체가 채권자나 권리자로서 고위 행정 공무원 또는 고위 행정 공무원의 적격 친척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을 경우.

b) D.1.a)조항 하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고위 행정 공무원은 이해관계 상충의 특성과 상황을 공개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하거나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1) 자격 상실이 교육위원회의 정족수에 영향을 주게 될 경우;

(2) 법이 자격을 상실한 고위 행정 공무원의 행동을 요구할 경우;

(3) 자격을 상실한 관리가 행동을 취하도록 승인된 유일한 사람의 경우.

c) 만약 위원단의 견해에 따라 참여를 승인할 경우, D.1.a 조항의 금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d) 전에 규정된 로비스트 또는 이 항목에 해당되는 로비스트는 이전에 규정 로비스트로서 이 건으로 보수를 받으며 다른 단체를 돕거나

대표했을 경우, 교육위원회의 임원이 아닌, 고용인 또는 고위 행정 공무원은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외의 소송, 계약 또는 공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의 기타 특정 문제에 이전 규정 로비스트로 등록된 기간의 달력연도 1년 후까지 직원 또는 고위 행정 공무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고용과 금융적 이익

a) 교육위원회 정책 또는 MCPS 규정에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거나 고용이 이해의 상충이 아니거나 이해의 상충으로 보여지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고위 행정 공무원은 다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 다음에의 취업 또는 다음으로부터의 재정적 이득을 취하는 것:

(a)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의 권한에 따라야 하는 기관;
또는

(b)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와 협상 또는 계약 관계의 기관

(2) 타 고용관계 유지로 고위 행정 공무원의 공정성 또는 자율적 판단을 훼손하거나, 교육구의 고용인으로서의 유용성에 영향을 주거나, 업무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배정된 정규 업무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고용 위치에 불리한 영향을 주거나, 배정된 임무에 어떠한 형태로든 대립이 되는 경우.

b) 이 금지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교육위원회 정책 또는 MCPS 규정이 승인한 민간 고용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가 이해의 상충이 아니며 상충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업무가 행정적인 고위 행정 공무원.

(2) 규정과 법에 따르면서 취임 선서하는 교육위원회 임원의 재정적 이해관계 또는 고용이 교육위원회 임원이 되기위한 후보자로서의 재산공개서에 공개된 경우.

(3) 고용이 이해상충을 일으키지 않으며 상충으로 보이지 않거나 재정적 이해관계를 밝힌 경우, 위원단의 의견에 따라 고용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허가합니다.

3. 퇴직

전직 고위 행정 공무원은 소송, 계약 또는 이 공무원이 현저히 참여한 교육구가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 외의 다른 단체에서 보수를 받고 도움을 주거나 대표할 수 없습니다.

4. 조건부 수당

고위 행정 공무원은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에 관련된 문제를 통하여 조건부 보수를 받기 위하여 다른 단체를 돕거나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5. 지위를 통해 얻는 이득

- a) 고위 행정 공무원은 공무적 의무의 일부이거나 교육위원회 의원이 보상 없이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이행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 공적 신분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익이나 타인의 이익, 또는 주 또는 지방의 계약을 특정인에게 주기위한 영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b) 특정 정규 로비스트 또는 로비활동 기관의 보상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를 위한 청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 c) 추가적 보수 없이 교육위원회 의원의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서비스의 실행은 업무 또는 공적 위치를 사용한 권력 남용이 아닙니다.
- d) Maryland 또는 지방 법 규정에 따라 고위 행정 공무원과 교육위원회 의원은기부를 받기 위해 공공 자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로 교육위원회 의원을 제외한 모든 고위 행정 공무원은 Maryland 또는 지방 법의 규정에 따라 정치운동 기부를 청탁하기 위해 고위 행정 공무원의 직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6. 선물

- a) 고위 행정 공무원은 청탁을 위한 어떤 선물도 받지 않습니다.
- b) 고위 행정 공무원은 개별적 로비스트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물을 청탁하거나 청탁의 기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 c) 고위 행정 공무원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람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주는 선물을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 (1)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와의 사업을 함께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 (2) 교육구의 권한의 대상인 경우;
 - (3) 고위 행정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로비스트인 경우;
 - (4) 고위 행정 공무원의 교육구 임무의 업적 또는 실패의 여부를 대중이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물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d) 이 부조항 6. c)에도 불구하고, 고위 행정 공무원은 다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 (1) 기부 또는 후원단체와 함께 음식과 음료를 취함;
 - (2) 금전적 가치가 낮은 기념품 또는 상;
 - (3) 20불 미만의 청탁이 아닌 선물 또는 달력연도 1년 동안 도합 100불 미만의 청탁이 아닌 선물 또는 정보적 가치가 적은 물품;
 - (4) 고위 행정 공무원이 위원단 또는 회의의 토론에 참여한 대가로 받는 회의에서의 음식, 여행, 숙박, 공적 유흥을 위해 적절한 비용;
 - (5) 만약 선물 또는 입장표가 교육위원회의 의례 또는 행사의 연장일 경우, 모금행사, 문화, 정치적 행사에서 교육위원회 의원에게 제공하는 티켓의 선물 또는 무료 입장;
 - (6) 서면 소견에 따라 받은 선물 또는 선물의 종류가 교육위원회의 사업의 공정 운영에 해롭지 않으며 선물이 온전히 개인적이며 사적인 부항목 행정으로부터 예외인 위원단의 특정 선물 또는 선물의 종류;

- (7) 혈연 또는 결혼 또는 고위 행정 공무원의 가족 인원이 아닌 다른 관계의 사람이 제공한 선물;
- (8) 회의에서의 스피치 또는 참여에 대한 사례금이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 직위와 무관한 경우.

e) 위의 6.d) 조항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고위 행정 공무원이 받은 선물을 받은 고위 행정 공무원의 공평성과 자주적 판단을 해칠 수 있을 경우;
- (2) 고위 행정 공무원의 공평성과 자주적 판단을 해칠 수 있게 보이는 현저한 가치의 선물; 또는
- (3) 고위 행정 공무원이 자신이 받은 선물이 공평성과 자주적 판단을 하는 것을 해친다고 믿거나 믿을만한 이유가 되는 현저한 가치의 선물

7. 비밀정보의 공개

고위 행정 공무원의 임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고위 행정 공무원은 고위 행정 공무원의 공적 직위에 따라 취득한 비밀정보 및 경제적 혜택 또는 타인을 위해 공개되어 있지 않은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납품

- a) 특정 선발, 입찰에의 초대 또는 구매, 조달을 위한 제안 제출의 요청에 따라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를 돕는 개인 또는 개인에 고용된 사람은, 입찰 또는 제안을 제출하는 사람을 돕거나 대표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도 입찰 또는 조달을 위한 제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b) 위원단은 설명문헌, 단독 자원 조달, 조달 사무실의 서면 탄원을 제공하여 이 항목의 요건으로부터의 면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E. 재산공개 서류-일반 규정

1. 공문서

- a) 위원단은 이 항목 하에 철한 모든 재산공개 서류를 관리해야 합니다.

- b) 위원단은 재산공개 서류를 일반 업무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검토와 복사를 할 경우, 교육위원회는 적절한 비용 및 행정적 절차를 책정합니다.
- c) 만약 재산공개를 개인이 검토하거나 복사할 경우, 위원단은 다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 (1) 재산공개 서류를 검토 또는 복사한 개인의 이름과 집주소
 - (2) 검토 및 복사된 재산을 공개한 사람의 이름
- d) 재산공개를 복사 또는 검토 받은 사람의 요청에 따라, 위원단은 재산 공개를 검토한 개인의 이름과 주소의 사본을 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e) 2019 년 1 월 1 일 이후에 제출한 서류의 경우, 의원단은 개인이 집주소로 지정한 개인의 주소를 공개하도록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보유 요청

위원단은 재산공개 양식을 받은 후부터 4 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3. 위원단의 검토

위원단은 이 정책에 따라 제출한 재산공개 양식을 검토해야 하며, 누락 또는 결여된 서류를 제출한 개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준수하지 않은 증거는 위원단이 추적해야 합니다.

F. 재산공개 서류-일반 학교 고위 행정 공무원과 고용인

- 1. 학교 고위 행정 공무원과 의사 결정권이 있거나 모든 회계연도에서 다음 기능에 권한이 있는 사람의 주요 자문인 역할을 하는 학교 고용인은 이 항목에 따라 재산공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a)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의 정책 작성;
 - b) 준사법적 권한의 수행,규제, 인가, 검사, 감사 기능;
 - c) 준비, 승인, 감사 또는 회계연도 내의 총액 10 만 불 가치의 물품에의 교육구의 대여, 구매, 리스에의 관여.

- (1) 개인 서비스의 계약
- (2) 재료, 물품, 설비 명세
- (3) 제안 또는 입찰 요청

2. 제출 마감일

- a) 학교 고위 행정 공무원과 교직원, 고용인은 F.1.의 문장에 따라 고용 또는 취임하는 달력연도 전, 재산공개서를 매해 4월 30일 전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 b) 재산공개서가 요구되는 사무실의 공석을 채우도록 임명된 고위 행정 공무원으로서 전년도 재산공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명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c) 사망 이외의 이유로 재산공개가 요구되는 사무실을 떠나는 경우, 사무실을 떠난 후 60일 이내에 재산공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공개서는 사무실을 떠나기 전 년의 재산공개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의 달력연도와 현 달력연도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3. 특정 MCPS 학교 고위 행정 공무원과 고용인을 위한 재산공개 서류 내용

재산공개서에는 교직원의 외부 고용, 이해상충, 개인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구의 권한 하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달력연도에 받은 선물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위원단에게 위원단이 선서 또는 지지를 통해 승인한 양식에 제출해야 합니다.

- 4. 모든 고위 행정 공무원 또는 고용인은 특정 제안에 관련하여 이해상충이나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야기될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충분한 시간 전에 고용과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G. 재산공개 양식 - 교육위원회 의원과 후보자

- 1. 이 항목은 모든 교육위원회 의원과 후보자에 해당합니다.
- 2. 제출 마감일

- a) 교육위원회 의원은 매해 위원단이 선서 또는 지지를 통해 승인한 양식을 통하여 전년 달력연도의 재산공개서를 4 월 30 일까지 위원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b) 교육위원회 의원 입후보자
 - (1) 보고 기간 동안, 이 항목의 다른 조항에 따라 재산공개서를 제출한 고위 행정 공무원을 제외하고 모든 교육위원회 의원 후보자는 매해 선거를 통해 후보자 지명이 이루어지는 매해 초에 재산공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교육위원회 의원 후보자는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a) 후보자 인증이 접수된 해 이내에, 후보자의 승인을 접수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후보자 인증과 함께 선거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위원단이 후보자 인증을 제출하기 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b) 선거의 해에 4 월 30 일 이전 또는 후보 사퇴 마지막 날에 이 서류를 위원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c) 이 서류는 서류가 요구되는 모든 해의 4 월 30 일까지 또는 그 전에 위원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3) 서류제출의 불시행
 - (a) 후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지정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선거위원회가 서류 미비를 알리는 서면 통보를 받고 8 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는 후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 (b) 선거위원회는 section G.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양식의 서류를 모두 충족하지 않은 이상 후보자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 (4) 이 항목 하의 서류 제출 30 일 이내에, 선거위원회는 위원단 또는 위원단이나 교육위원회가 지정한 사무실에 서류를 전합니다.

c) 직위 임명

교육위원회의 공석을 채우도록 임명된 고위 행정 공무원으로 아직 재산공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 달력연도 공개서를 임명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d) 직위 사임

사망 이외의 이유로 교육위원회 의원을 사임하는 경우, 사임 후 60일 이내에 재산공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공개서는 사무실을 떠나기 전 해의 재산공개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 달력연도와 현 달력연도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3. 교육위원회의 학생 의원(SMOB)은 MCPS 중고등학생이 선출됩니다. SMOB 임기는 7 월 1일부터 6 월 30 일까지 1 년입니다. 선거결과 발표 후 30 일 이내에 SMOB 는 재산공개양식(Section G. 4.에 명시된 개요에 따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일 동안, 앞선 달력연도의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윤리 위원단(Ethics Panel)을 담당합니다. SMOB 는 재산공개 양식을 선거일부터 SMOB 임기를 마치는 해당 SMOB 임기 마지막날인 6 월 30 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 교육위원회 의원과 후보자의 재산공개 양식 내용

교육위원회 의원과 후보자는 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선서 또는 지지를 통해 위원단이 제공하는 재산공개 양식을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a) 부동산에서의 이자

이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에는 모든 위치의 부동산에서의 모든 이자 명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의 각 이자의 명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실주소, 우편주소, 소유지의 법적 설명을 포함한 소유지의 종류와 위치;
- (2) 이자의 상태와 부담을 포함한 이자의 종류와 취득한 이자의 범위;
- (3) 이자를 제공한 사람의 신분과 날짜, 방식;

- (4) 이자의 전환으로 받은 가치의 종류와 금액 또는 구매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이자를 취득하였을 당시의 공정한 마켓 가치;
- (5) 보고기간 동안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자를 전환한 경우, 이자 전환에 대한 설명, 이자의 종류와 금액과 이자를 전환한 사람의 인적사항; 그리고
- (6) 소유지의 이자를 취득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

b) 법인과 파트너십에서의 이자

이 항목 하에 제출한 서류에는 주식회사 또는 조합이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와 사업 여부에 상관 없이, 기업, 조합, 유한책임조합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또는 유한책임주식회사(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의 모든 이자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항목에서 보고한 각 이자명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기업체,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또는 유한책임주식회사(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의 주 사무실 이름과 주소;
- (2) 이자의 상태와 부담을 포함한 이자의 종류와 취득한 이자금액;
- (3) 보고기간 동안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자를 전환한 경우, 이자 전환에 대한 설명, 이자의 종류와 금액과 이자를 전환한 사람의 인적사항; 그리고
- (4) 보고기간 동안 이자 취득에 관해:
 - (a) 이자를 제공한 사람의 신분과 날짜, 방식; 및
 - (b) 이자 본질과 이자 전환으로 주어지는 고려하는 금액 또는 구매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이자를 취득하였을 때 공정한 마켓 가치.
 - (c) 개인은 이 문장 2.b)(2) 하의 이자 금액을 보고하는 것으로 달러 금액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i) 주식회사의 지분권은 소유 증권의 수, 주식회사의 주식이 공개 되어 있지 않다면 소유한 지분이자의 백분율; 또는
- (ii) 조합기업의 소유분 이자의 경우, 지분이자 소유 백분율.

c)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와의 사업을 통한 기업체에서의 이자

이 항목 하에 제출한 서류에는 주식회사 또는 조합이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와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의 이 부항목 문장 b) 하에 보고된 이자 이외의 모든 이가지불 명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항목에서 보고한 각 이자명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기업체의 주 사무실 이름과 주소;
 - (a) 이자의 상태와 부담을 포함한 이자의 본성과 취득한 이자금액;
 - (b) 보고기간 동안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자를 전환한 경우, 이자 전환에 대한 설명, 이자의 종류와 금액과 이자를 전환한 사람의 인적사항; 그리고
 - (c) 보고기간 동안 이자 취득에 관해:
 - (i) 이자를 제공한 사람의 신분과 날짜, 방식; 및
 - (ii) 이자 본질과 이자 전환으로 주어지는 고려하는 금액 또는 구매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이자를 취득하였을 때 공정한 마켓 가치.

d) 선물

이 항목 하에 제출한 서류에는 매 선물의 가치가 20 불을 넘는 모든 명세 또는 달력연도 이내에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와 사업하는 개인으로부터 또는 개인의 이름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은 합계 100 불 이상의 선물의 명세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각 선물의 명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선물의 종류와 가치에 관한 설명; 그리고

(2)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물을 제공한 사람 또는 대신하여 제공한 사람의 신분.

e)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와의 사업을 통한 기업체에의 고용 또는 이자

이 항목 하에 제출한 서류에는 모든 사무실, 관리자, 보고시기 동안,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와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을 하는 개인, 개인의 직계가족에 의한 유급 고용의 모든 명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항목의 각 직위의 보고의 명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기업체의 주 사무실 이름과 주소;
- (2) 사무실, 관리자, 유급 고용의 직위와 특성은 시작 날짜부터 유효합니다.
- (3) 이 정책의 정의항목에서 명시된 "함께 사업을 한다(Doing business with)"의 세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과 관련되어 있어 보이는 각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의 이름.

f) 개별 교육구 또는 부서와의 사업 또는 규정에 따라 사업을 하는 기업

이 항목 하에 제출한 서류에는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개인의 교육구 유닛 또는 만약 개인이 부채가 되는 거래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의 개인 또는 개인의 직계 가족에 의해 보고된 기간 동안 빚진 부서에 관련된 소매 크레딧 어카운트를 제외하고 모든 부채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항목에서 보고한 각 부채의 경우, 명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부채가 생긴 날짜와 부채자의 신분;
- (2) 보고기간 말의 빚진 부채의 금액;
- (3) 부채상환기간과 이 기간 증가 또는 감소된 부채 원금금액;
- (4) 부채를 위해 준 증권, 만약 있을 경우.

g)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에의 고용

이 항목 하에 제출한 서류에는 보고기간 동안의 교육위원회 의원 또는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에 고용 후보의 직계가족의 명세를 포함해야 합니다.

h) 취득한 수입 자원

(1) 이 항목 하에 제출한 서류에는 각 고용 장소와 개인 또는 개인의 직계가족이 독자적 또는 부분적 소유권자이며 이 보고기간 동안 개인 또는 개인의 직계 가족이 수입을 취득한 기업의 이름과 주소 명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미성년자의 고용 또는 사업 소유는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가 규제 또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거나 고용 또는 미성년자의 사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2019 년 1 월 1 일 이후의 기재된 서류의 경우, 만약 개인의 배우자가 교육위원회가 규정한 로비스트일 경우, 개인은 로비활동 목적을 위해 배우자와 연결되어 있는 독립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i) 이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에는 추가 이자 또는 공개를 희망하는 개별 서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5. Section G 2 의 목표에 따라 이 정책의 (a) (b), (c), 다음 이자는 개별 서류의 이자로 고려하게 됩니다:

a) 개인의 직계 가족이 소지하는 이자. 만약 이자가 보고한 시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줄 경우.

b) 보고시간 동안, 개인이 30 퍼센트 이상 소유한 사업체가 소유한 이자.

c) 보고시간 동안, 신탁 또는 소유지로의 이자;

(1) 개인이 소지한 복귀권 또는 수령자로의 이자 ; 또는

(2) 바꿀 수 없는 신탁일 경우, 개인이 재산 양도인이었던 경우.

6. 이 항목에 책정된 재산공개에 추가로, 교육위원회 의원과 후보자는 명시한 사람의 특정 제안행위와 연결된 이해상충 또는 충분히 미리 예측한 행동의 경우 공공에의 공개를 적절히 허용하는 가능한 이해상충을 위원단에게 서류제출과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H. 로비활동의 공개

1. 교육위원회, 학교 고위 행정공무원 또는 사무실 임무 업무 단체 또는 개인에 영향을 주는 직원 앞에 자신, 사업체 또는 단체를 대표 또는 개인적으로 출두하고, 의도적으로 달력연도에 100 불 이상을 음식, 엔터테인먼트 또는 기타 선물 또는 선물들로 교육위원회 의원 또는 고유 행정 공무원에게 소비하여 소비의사 또는 타당한 기대한 사람은 윤리 위원단에 첫 출두 후 5 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교육위원회 또는 학교 고위 행정공무원 또는 학교 고위 행정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공식 입찰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의사소통을 하고 타인에게 청탁을 한 사람과 이 목적으로 달력연도 내에 300 불 이상을 소비한 사람은 이 예산이 초과한 후 5 일 이내에 윤리 위원단에 이를 등록해야 합니다.
3. 등록 서류는 로비활동가와 로비활동가를 대신하여 활동한 사람의 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등록자가 교육위원회 또는 학교 고위 행정공무원 앞에 나오는 주제에 관해 명시해야 합니다. 등록 서류는 달력연도 동안에 말은 로비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이 항목 하의 등록은 달력연도 말 이후에 학교 고위 행정공무원에게 제공한 음식, 엔터테인먼트, 선물의 가치, 날짜 그리고 본질을 포함하여 30 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불 가치의 선물이 달력연도 내에 100불을 넘을 경우, 등록자는 이를 받은 학교 고위 행정 공무원의 이름을 공개해야 합니다.
5. 이 항목에 따라 제출된 등록과 보고서는 이 정책의 section E. 1.에 있는 특정 상태에 따라 검토와 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공보존기록으로 윤리 위원단이 관리해야 합니다.
6. 이 항목 요건에는 다음 행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이 서비스가 로비활동이 아닌 교육위원회의 제안 또는 유보된 시행에 대하여 의뢰인으로 자문과 의견 표현을 제공하는 전문적 서비스일 경우.

- b) 위원회의 특정 초대 또는 요청에 따라 기관에 참석한 경우로 만약 개인이나 단체가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의 진행이나 실패에 어떠한 연결도 없을 경우.
- c) 유닛의 특정 초대 또는 요청에 따라 기관 유닛에 참석한 경우로 만약 개인이나 단체가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의 진행이나 실패에 어떠한 연결도 없을 경우.
- d) 참석이 어떤 단체를 대표하지 않고 정식으로 임명된 고위 행정 공무원, 주 공무원, 미국 또는 주의 정치적 기관의 공식 임무의 일부분일 경우.
- e) 경제, 비즈니스에 직접적이거나 특정 혜택 또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개인이나 기관의 고용자로 타 로비활동이나 더 나아간 행동에 연결되지 않는 출판자의 행동 또는 일반 대중에게 일상적으로 뉴스를 제공하거나 편집한 의견을 제공하는 신문사, 라디오, TV에서 일하는 일원의 업무의 경우
- f) 개인이 로비활동을 하지 않으며, 교육위원회에 개인이나 기간이 로비활동자의 요청에 따라 증원한다고 알려진 경우, 특정 초대 또는 요청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앞에 선 등록된 로비활동자.
- g) 개인 또는 기관이 로비활동을 하지 않으며, 교육위원회와 교육구의 기관 유닛에 개인이나 기간이 로비활동자의 요청에 따라 증원한다고 알려진 경우, 특정 초대 또는 요청에 따라 유닛 앞에 선 등록된 로비활동자.
- h) 기관의 교리 적용을 위해 기관의 소속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실제 종교단체가 단독적으로 대표하는 경우.
- i) 단정한 용모는 고위 행정 공무원, 관리자(디렉터), 임원, 카운티와 타 기업을 대표하지 않고 지방자치제를 위한 로비활동에 관계되어 있는 고용인의 의무의 일부분입니다.

I. 예외와 조정

윤리 위원단은 직원(그러나 교육위원회 의원은 제외)에게 위원단이 이 규정이 다음 항목의 목적에 따라 보관을 요구하지 않거나 다음과 같을 경우, 이 정책의 section D 과 section F 규정의 공제 또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불합리적인 사생활 침해의 경우;
2. 공공 서비스를 위해 현저하게 유능한 인적자원을 줄이게 될 경우; 그리고
3. 이 정책에 따라 보존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J. 윤리 위원단

1.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산하에 교육위원회가 임명한 5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윤리 위원단이 있습니다.
2. 임기는 3 년으로 매해 한 명의 임원의 임기가 만기가 되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3. 교육위원회, 임원, 고용인, 교육위원회의 주체기관 직원이나 그 배우자는 위원단 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4. 위원단은 위원장을 위원회원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 a) 위원장의 임기는 1 년입니다.
 - b) 위원회장은 재임할 수 있습니다.
5. 위원단은 윤리담당 관리자가 정책의 특정 책임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야 하며 교육위원회는 교육감과의 상의하에, 위원단에게 필요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도움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6. 교육위원회는 이 정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이해상충이나 이 정책에 명시된 사항에 관해 윤리 위원단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7. 위원단은 이 정책의 해석을 책임지는 자문단이며 개인에게 이 정책의 적용에 관한 자문을 합니다.
8. 위원단은 이 적책의 목적과 실행에 관한 공공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9. 위원단은 이 정책 하의 모든 사람이 제출한 모든 양식의 보관기관이며 이 정책에 따라 양식에의 일반인 열람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10. 자문 의견의 요청

- a) 고위 행정 공무원, 고용인/직원 또는 이 지부에 관련된 사람은 자문단으로부터 이 정책 적용에 관련된 자문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b) 위원단은 자문의견 요청에 즉시 응답해야 하며 제공된 또는 위원단에게 합리적으로 주어진 사실에 따른 이 정책에의 해석을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 c) 공공기록에 관한 해당 주법에 따라, 위원단은 자문의견을 신원을 삭제한 상태로 게재 또는 공개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11. 이의제기/고발 접수

- a) 누구든, 위원단의 이 정책 수행의 위반에 관해 이의제기/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 b) 이의제기/고발은 서면과 선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c) 위원단은 교육위원회의 법률 고문 또는 교육위원회가 조사와 검토를 의뢰한 법률 고문에게 이의제기/고발을 제출합니다.
- d) 만약 위원단이 위반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 위원단은 이의제기/고발을 기각합니다.
- e) 만약 합당한 이유에 따라 위반이 밝혀질 경우, 이의제기/고발은 위원단이 진행하는 청문회로 가게 됩니다.
 - (1) 응답자는 청문회 전에 위원단과 합의 또는 해결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만약 위원단이 제안한 합의 또는 회복이 이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여길 경우, 위원단은 교육위원회에 이 합의 또는 해결안을 받아들이기를 추천합니다.
 - (3) 만약 교육위원회가 위원단의 추천 제안에 동의할 경우, 교육위원회는 제안한 합의 또는 해결안을 받아들입니다.
- f) 청문회를 통한 위원단의 위반 사항 발견에는 발견한 사실과 법적 결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g) 특정한 문제에 대해 조언견해를 제공하는 전문가 모임인 위원단은 찾아낸 점과 권고 행동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h) 만약 교육위원회가 발견한 위반행위에 동의할 경우, 교육위원회는 정책이 제공하는 제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i) 교육위원회는 이의제기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1) 위원단의 권고에 대한; 또는
 - (2) 만약 교육위원회가 발견한 위반행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j)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 교육위원회의 최종결정까지, 이의제기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가 의견일치를 보이는 위원단이 발견한 위반은 법이 공개를 금지할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를 공표합니다.
- k) 만약 교육위원회 의원이 위원단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교육위원회 의원은 이 이의제기를 위한 위원회 심사에 참석하거나 투표하지 않습니다.

12. 제재/처벌

- a) 교육위원회 의원, 학교 고위 행정 공무원, 고용인이 이 조항의 위반을 발견할 경우, 사무실로부터의 척출, 징계 또는 기타 개별 행동을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또는 교육위원회 정책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 b) 이 정책의 로비 조항을 위반한 개인 또는 기관은 공개적으로 이를 알리고 법에 지정된 바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됩니다.

K. 바라는 결과

MCPS 는 정기적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유지합니다. 행정, 교사, 도움 서비스 교직원을 포함한 이 정책의 모든 대상은 이를 다 이해하고 높은 윤리 기준을 갖고 이에 따릅니다. 윤리 강령인 정직, 진실, 책임, 시민정신은 MCPS 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 있으며, 가능한 최대한 적용하고 있습니다.

L. 전략의 시행

MCPS의 윤리 담당관의 위치는 이에 의해 책정된 바와 같습니다. 윤리 담당관은 교육위원회에 직접 보고합니다. 윤리 담당관은 윤리 위원회의 업무를 돕고 촉진하며 모든 윤리와 이해상충에 관한 MCPS 활동 적용을 위해 본인의 지도력을 제공합니다.

M. 검토와 보고

이 정책은 교육위원회의 정책평가 절차에 따라 검열됩니다.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General Provisions Article §§ 5-205, 5-206, and 5-815—5-820, and Appendix A, under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Board of Education Ethics Regulations

정책 역사: 결의안에 따른 채택 번호 1003-83, 1983년 12월 13일, 결의안에 따른 수정 번호 203- 84, 204- 84, 205- 84, 206- 84, 207- 84, 1984년 3월 13일; 결의안에 따른 재구성 번호 333- 86, 1986년 6월 12일 결의안 번호 458-86, 1986년 8월 12일, 결의안에 따른 채택 번호 550-88, 1988년 10월 24일, 결의안에 따른 수정 번호 209-96, 1999년 3월 22일; 결의안을 반영한 개정 번호 314-03, 2003년 6월 10일; 결의안에 따른 수정 번호 442-12, 2012년 10월 9일; 결의안에 따른 수정 번호 249-19, 2019년 4월 9일.